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정경희 강사(중앙대학교)

이두영 교수(중앙대학교)

1. 서론

저작권법은 정보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네 그룹간(저자, 출판사, 도서관, 이용자)의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여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이로써 그 사회의 문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본 법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크게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여 왔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정보의 생산·배포·관리 및 이용의 과정을 급격히 변모시킴으로써, 관련자들 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시켰으며, 저작권법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었다.

2000년 1월 개정된 국내 저작권법은 전송권 신설과 ‘복제’ 개념 재정의를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였던 사적이용 및 도서관에서의 면책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논의가 있었다.

신설된 전송권과 디지털 복제권에 대한 권리 역시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제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 도서관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문화 향상발전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은 그동안 지켜왔던 ‘공정한 이

용'의 정신을 디지털 도서관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저작권법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는 민주적 저작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전송권과 복제권의 제반요소를 법률적 차원에서 분석하며, 이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조사와 판례분석을 통해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과 복제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제한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방법과 국내외 및 국제 저작권법을 비교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복제 및 전송권 제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조사하였다. 또한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대한 공정이용원칙 적용 사례를 검토하기 위하여 LEXIS, WESTLAW, FINDLAW 등의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국내외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저작권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유형

아날로그 환경에서 발전했던 저작권 규정과 실제들이 정보흐름의 전과정에 변화를 초래한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바, 이는 정보공유론적 접근과 신고전주의적 접근으로 대별되고, 이 중간에 민주적 저작권 패러다임이 자리잡고 있다.

정보공유론은 저작자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저작물에 대한 독점이 필요적인 악이므로 가능하면 이를 축소·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저작권은 인류 문명의 발달과 지식의 축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신고전주의적 접근법은 정보공유론과는 반대로 저작자에게 최대한 모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저작권법이 양도 가능한 재산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할 때 기존의 저작물을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민주적 저작권 패러다임은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엔진으로 사용

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에 구체적인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 민주주의가 저해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패러다임은 정보공유론과 신고전주의적 접근법의 중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을 창작물의 생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서 이해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보를 ‘팔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논지를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에 적용하여 볼 때 민주적 저작권론은 인쇄물 환경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영역인 ‘자유로운 이용 지대’(free use zones)가 그대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도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아날로그 환경에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공정이용원칙이 네트워크 환경의 이용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은 국내 저작권법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민주적 저작권 패러다임을 근거로 논의를 전개할 것인바, 이는 저작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접근법이기 때문이다.

2.2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제 및 전송권

디지털 복제는 일시적 복제와 영구적 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일시적 복제는 로컬 시스템의 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메모리로 불러들일 때 일어나는 복제와 원격 컴퓨터에서 전송된 정보를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경우로 양분할 수 있다. 영구적 복제는 ① 디지털 저작물을 다시 디지털 저작물로 복제하는 것 ② 디지털 저작물을 인쇄물로 복제하는 것 ③ 인쇄저작물을 디지털 저작물로 복제하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디지털 대 디지털 복제의 유형은 ① 업로드, 다운로드, P2P(Peer to peer)방식, 이메일 방식 등의 온라인 복제와 ② 디스켓을 통한 오프라인 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유형의 디지털 복제에 대한 권리 부여방식은 각국의 저작권법마다 매우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상 ‘복제’의 정의에 포함시키는가의 여부이다.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이것을 ‘복제’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제18

조의 2 전송권을 통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미국에서는 DMCA 제1201조에서 반우회금지조항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인 바 있다.

저장을 하지 않고 화면을 통해서만 보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의 처리는 각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전송권을 신설해 화면현시를 저작자의 권리로 인정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반우회금지조항'을 통하여 전송에 대해서도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WCT에서는 '공중전송권'으로 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인 바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송을 전제로 한 복제행위는 전송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즉, 네트워크 상에서 아무리 사적인 이용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복제권 제한의 적용을 받기 이전에 전송권의 적용으로 위법이 되는 것이다. 전송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제권의 제한규정이 네트워크상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미국의 지적재산권 및 정보화부구조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전송권 제한의 필요성 대하여 공정사용과 기타 예외 및 제한이 디지털 정보에 적용될 경우에도 편익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3. 디지털 복제 및 전송권에 대한 저작권법 분석

3.1 국제저작권법

WCT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 적용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의 규범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저작권자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디지털 전송에 대한 권리인 제8조 '공중전송권'을 신설한 것이다.

이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로써 "체약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예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저작권의 면책도 위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복제 및 전송 등을 통한 서비스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유럽공동체위원회의 수정지침안 이유서는 회원국들이 직·간접적인 또는 일시·영구적인 복제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이 그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제공권(right of making available)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써,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가 행해지는 경우, 시청각 디지털 음반매체상의 복제가 사적이용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 복제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고 비영리적 목적일 경우, 수업, 과학적 연구를 위한 이용일 경우 공중전송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에서 위와 같은 예외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수정지침안에 도서관 면책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복제권으로부터 일부 복제행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공시설에 도서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예외가 공중전송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온라인상으로 저작물을 이용시킬 경우 권리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한다. 즉 도서관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을 전송의 방식으로 서비스하면 상업적 온라인 전송업체와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소유자와 계약을 기반으로 도서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정지침안은 공공도서관들의 서비스가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제한받아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3.2 외국의 저작권법

미국의 DMCA 제1201조 저작권 보호시스템의 우회에 관한 규정(반우회금지조항)은 기술적 장치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 것이다. 그러나 DMCA의 반우회금지조항은 공정이용 무효화하고,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나 공유에 속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접근·이용·복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역분석을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저작권 보호범위의 제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DMCA에서 도서관 면책과 관련하여 비영리 도서관과 문서보관소에서 보존, 안전, 또 다른 도서관에서 연구를 위한 위탁을 위하여 미간행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와 패손, 훼손, 분실, 도난당한 경우에 한하여 3부의 복제물을 작성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맷으로 가능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도서관 관외로 이용시킬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DMCA는 반우회금지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별도의 개정사항 없이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저작권법에서 유지해 왔던 공정이용원칙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축소되어 적용될 것이다.

3.3 우리나라 저작권법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서 제2조의 14 '복제'의 정의를 수정함으로써 디지털 복제를 복제권의 보호대상으로 하였으며, 제18조의 2 전송권을 신설함으로써 전송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을 부정하였다. ② 사적이용일 경우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전송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을 일부 도서관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배와 정보계층화의 심화, 도서관 정보서비스 및 도서관상호협력기능을 위축시켰다. ④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기술보호장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의무화함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이

용자 서비스를 저하시켰다. ⑤ 이용자 요구에 의한 디지털 복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시행령 제3조의 단서 조항에 규정된 이외의 도서관에서는 보존용 디지털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도서관간 자료 전달에 있어서도 디지털 복제물은 네트워크 통하여 전달될 수 없다. ⑥ 디지털 저작물을 관외전송을 통하여 이용할 수 없다.

본 장에서 분석한 각국 및 국제 저작권법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저작권 소유자에게 부여한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제한규정을 요약하면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각국 저작권법의 일시적 복제 및 전송에 대한 권리 비교

	저작권법 명칭	최종 개정 일	일시적 복제에 대한 권리 부여 여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	전송에 대한 권리 부여 방법	전송권에 대한 예외
한국	대한민국 저작권법	2000. 1. 12	복제권 부여 유보		전송권 신설	시사보도, 도서관 구내
WI PO	WCT	1996. 12. 20	복제권 부여 유보		공중전송권 신설	국내법에 위임
EU	Proposal for an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7/0359/COD	2001. 2. 14 (EU 의회 승인)	복제권 부여	경제적 의미가 없거나,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 서 이루어질 경 우	공중전송권 신설	비영리적 이용 수업, 과학연구 ->권리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
미국	DMCA	1998. 10. 28	반우회금지 조항을 통한 인정	공정이용	반우회금지 조항을 통한 인정.	공정이용, 도서관 이용 등
일본	日本著作権法	1999. 6. 15	반우회금지 조항을 통한 인정	사적이용	반우회금지 조항을 통한 인정	사적이용 소규모 LAN
호주	Copyright Amendment (Digital Agenda)	2000. 8. 17			공중전송권 신설	공정이용, 도서관 이용 등

<표 2> 사적이용 및 도서관 면책조항에 대한 전송권 제한의 비교

	사적이용에 대한 전송권 제한	도서관 예외규정의 내용
한국	제한규정 없음	디지털 복제 가능한 도서관 제한 도서관간 전송만 허용, 복제 불가 관외전송 불가
WIPO	국내법에 위임 : 단,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3단계 테스트)	국내법에 위임 : 단,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3단계 테스트)
EU	디지털 사적복제에 관한 예외를 적용할 경우 회원국들은 보상체제와 기술보호 장치 갖추어야함 3단계 테스트를 충족한 경우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음 이 시설에 도서관이 포함 그러나 관외 전송은 권리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공공도서관서비스가 제한받아서는 안됨
미국	빈우회금지에 대한 예외 공정이용일 경우	보존용, 파손, 채손, 분실, 도난도서에 대한 디지털 사본 3부 작성 도서관 관외 전송 불가 수서목적으로 기술장치우회는 가능
일본	소규모 동일한 구내(LAN)에서의 송신	수정사항 없음
호주	공정이용일 경우 합리적 부분(전체저작물의 10%)일 경우	합리적 부분일 경우 디지털 복제와 전송 가능

4. 디지털 복제 및 전송권 제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조사

4.1 설문조사의 목적 및 설문의 내용

회수된 설문지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대한 권리부여와 권리제한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견해차이를 파악하고, 각기 다른 견해가 저작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3장에서 고찰하였던 국내 저작권법

에서 디지털 복제권과 전송권의 사적이용 및 도서관 면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내용은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국내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둘째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대한 기존의 면책규정이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셋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유자의 권리제한이 필요한 이유 및 권리제한의 결정요인에 대한 질문이다.

4.2 설문조사의 방법 및 대상

설문지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01년 2월 15일부터 같은 해 5월 2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수는 모두 100부였으며 그 중 57부를 회수하여 전체 회수율이 57%에 달하였다. 설문지의 배포수가 적었던 것은 저작권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어야한다는 것을 전체로 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의 저작권 관련 연구자 및 실무담당자가 많지 않고, 이용자들의 관심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설문대상의 규모가 적었고, 응답자 회수율도 높지 않았다. 본 조사연구의 설문대상자는 저작권법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이로써 본 설문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4.3 조사결과 분석

설문분석을 종합해 볼 때, 각 항목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보생산자, 이용자, 사서 그룹의 견해와 출판인의 견해가 대별되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 부여에 관한 응답에서 정보생산자 77.0%, 도서관 사서 85.7%, 이용자 93.8%가 저작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출판인 그룹은 50.0%만이 저작권 부여에 반대하였다. 또한 사적이용시 전송권 제한에 대한 응답에서

도 정보생산자, 사서, 이용자 등 세그룹과 출판인 그룹의 견해가 대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디지털 저작물을 사적으로 이용할지라도 전송권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정보생산자 7.7%, 사서 7.1%, 이용자 6.3%였으나, 출판인 그룹은 64.3%에 이르렀다.

도서관 면책에 대한 응답결과 분석에서도 그룹간 견해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사서에 의한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시 권리제한에 대한 질문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사서가 이용자에게 전송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출판인 그룹의 71.4%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였으나, 나머지 세그룹에서는 그러한 응답이 매우 적었다. 즉, 정보생산자 그룹의 38.5%, 도서관 사서 그룹의 7.1%, 이용자 그룹의 12.5%만이 사서에 의한 이메일 전송 서비스가 허용되어서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이용자에 의한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시 권리제한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이용자가 관외에서 화면현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하는가에 대하여 출판인 그룹의 50%가 허용불가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세그룹은 관외에서 화면현시를 통한 저작물 이용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정보생산자 그룹의 84.6%, 도서관 사서 그룹의 92.8%, 이용자 그룹의 100%가 화면현시를 통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디지털 저작물의 도서관 상호대차 허용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출판인 그룹의 35.7%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정보생산자 그룹은 7.7%, 도서관 사서 그룹은 14.3%, 이용자 그룹은 6.3%만이 허용불가의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설문응답결과 분석을 통하여 저작물 유통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상반된 이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전송권에 대한 제한을 사적이용에 대해서는 전혀 허용하지 않았으며, 제28조 도서관면책에 있어서도 사서에 의한 이메일 서비스, 관외전송, 도서관간 디지털 저작물의 상호대차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제1조에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바처럼, 이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균형있게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설문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이해당사자중 정보생산자, 이용자, 사서그룹의 견해보다는 출판계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5. 디지털 복제 및 전송과 관련된 판례 분석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의 문제를 다룬 판례 중에서 공정이용과 관련한 사안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판례들은 주로 미국의 각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판례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미국의 판례는 국내의 판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복제 및 전송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5.1 일시적 복제의 공정이용 여부 판례

MAI 대 Peak 사안에서 MAI는 Peak가 고객용 컴퓨터 유지보수 시 MAI OS 소프트웨어를 램에 일시적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정은 MAI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고객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의 램에 로딩하는 것은 허락받은 이용이지만, Peak같은 제3자에 의한 이용이나 복제는 라이센스의 '범주 이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정은 램상의 복제를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인정하여 MAI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금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Asarch는 Peak사의 이용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OS 소프트웨어의 창작성 결여,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OS의 필수적 작동 등의 이유를 들어 MAI의 소프트웨어를 Peak가 램상에 복제한 것은 그것이 설령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용의 성격상 공정이용이라고 분석하였다.

램상에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라고 인정한 MAI 사안은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배타적으로 읽을 권리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 제2조의 14는 저작권법 상 '복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일시적 복제를 이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일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상의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단지 저작물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또는 일시적 저장이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복제권이 미치지 않거나 복제권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될 필요가 있다.

5.2 업로드의 복제 및 전송권 침해여부 판례

LA Times 대 Free Republic 사안은 LA Times와 Washington Post의 웹사이트에서 신문기사의 전문 혹은 일부를 Free Republic 웹사이트에 포스트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판례이다. 법원의 판결은 원고의 뉴스기사들이 전적으로 사실적인 것으로 저작물성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FR 웹사이트에 포스트된 기사 중 일부는 전혀 변형이 없었던 완전한 복제물이며, 신문의 기사 하나가 완전한 하나의 저작물이고, FR사이트 방문자들이 뉴스기사를 무료로 읽고 그것을 저장하도록 했으므로 원고의 기사판매시장을 격감시켰다고 보아 피고의 공정이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TC 대 Lerma 사안은 사이언톨로지 교회의 문서를 Lerma가 수서하여 인터넷상에 출판한 것을 둘러싼 분쟁이다. 원고는 사이언톨로지 교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신자에게만 공개되고 있는 저작물의 일부를 피고가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에 복제하고, 그 디지털 복제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Lerma는 원고의 저작물 중 일부를 다운로드하거나 스캐닝하여 자신의 컴퓨터로 복제하고 이 자료들 중 일부를 인터넷에 업로드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법원은 이용의 성격상 상업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저작물이 사실적 내용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의 이용으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의 이용을 공정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이나, 이용 목적이 중립적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복제의 양과 실질성 측면에서 시리즈물 중 하나가 전체로 복제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의 복제와 업로드는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후이즈 대 인터넷프라자시티 사건은 [\(주\)후이즈가 인터넷프라자시티](#)의 홈페이지 내용을 복제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후이즈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저작자가 분명히 인터넷프라자시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영업상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후이즈의 행위는 국내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5.3 온라인 복제 : AMRI 대 Napster, Inc.

본 사건은 원고인 A&M Records, Inc이 피고 Napster, Inc의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에 대하여 소송한 것으로 DMCA에 근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다. 냅스터 이용자들은 첫째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과 둘째,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의 이전, 또는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의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냅스터 측은 이용자들의 MP3 파일 이용은 음반 구입 결정을 위한 샘플링 작업이었다는 점과 이미 오디오 시디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냅스터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공간이동(space-shifting)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정은 냅스터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한 MP3파일은 원저작물을 변형하지 않고 단지 다른 미디어로 재전송된 것으로써 이것을 공정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이용의 ‘목적과 성격’ 요소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반복된 복제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냅스터 이용자들의 이용을 저작권 침해로 판정하였다. 공정이용 판단의 두 번째 기준인 저작물의 성격에 있어서 원고들은 냅스터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한 파일은 창작성이 있는 작품물과 음반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이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번째 판단 기준인 사용된 분량에 있어서 대량 복제와 전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공정이용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냅스터의 판결은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법하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결정한 것이므로,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혹은 저작권법 관련연구자들로부터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이것은 또한 DMCA를 적용한 판결이라는 점과 차세대 인터넷 기술인 P2P 방식의 파일교류에 대한 법정의 판결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정조언자 자격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저작권법을 강의하고 있는 18명의 교수 콘소시움에서 1심의 파기를 지지한 바 있다. 이들은 첫째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물관리를 통한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비침해 이용일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및 제1008조 하에서 개인적, 비상업적, 공정이용 등에 근거하여 다운로드, 업로드, 전송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셋째, 냅스터 이용자들이 MP3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비상업적 이용이었다는 점을 들어 법정판결의 파기를 제기하였다.

이상의 판례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이용원칙이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판례에서 이용의 목적이 비영리적일 경우 공정이용으로 판정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 상에서 이용되는 디지털 저작물이 비교적 창작성이 부족한 사실적, 시사적 내용일 경우 공정이용으로 보았다. 넷째, 이용된 디지털 저작물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이며,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 경우 공정이용으로 보았다. 다섯째, 디지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권리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6. 디지털 복제 및 전송권 제한 방안

6.1 사적이용시 권리제한

6.1.1 일시적 복제

일시적 복제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인정할 경우의 문제점은 그동안 저작권법이 규정해왔던 최초판매원칙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국내의 저작권법은 전송권을 신설함으로써 화면현시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들에게 부여한 바 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저작물을 화면에서 잠시동안 훑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또한 구입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적이용일지라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전송에 대한 제한규정이 사적이용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WCT 제10조 제1항에서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지침안은 제5조 제1항에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저작권법은 제107조에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규정으로써 공정이용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디지털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가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일어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분석결과 사적이용인 경우 화면현시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전체응답자중 75.4%로 나타났다. 화면현시에 대한 권리제한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는 출판인그룹의 응답자들 중 64.3%에 이르렀다. 이로써 저작권법의 규정이 출판인의 이해에 치우쳐 제정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MAI 사건에서 법정은 램상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공정이용의 네가지 요인 중 특히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용의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진 복제라는 점, 저작물의 특성 및 복제의 양에 비추어볼 때 이용의 성격상 공정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램상에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라고 인정할 경우 배타적으로 읽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일시적 복제가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용

의 성격과 저작물의 특성, 이용된 범위, 저작자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공정한 이용일 경우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가 제한될 필요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6.1.2 디지털 대 디지털 복제

오프라인으로 행해지는 디지털 복제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중 사적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 다운로드, P2P 방식의 온라인 복제는 국내 저작권법 제27조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유형의 복제는 반드시 복제 이전에 전송의 과정을 수반하는데, 전송권은 사적이용에 대하여 그 권리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가지 유형의 복제인 경우 그것이 아무리 사적인 이용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전송권 제도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WCT는 통상적인 이용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에 대하여 전송권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각국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에 해당하는 규정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이용원칙인바, 이는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에 대해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판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EU에서는 비영리적 이용과 수업, 과학연구 등에 대하여 전송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안하고 있다.

설문분석에서 사적이용시 업로드, email을 통한 복제, P2P방식의 복제에 있어서 저작권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체응답자중 각각 52.6%, 72%, 63.2%가 저작자의 권리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각 경우에 있어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것은 출판인 그룹이 가장 많았다. 즉 출판인 그룹의 응답자 중 71.4%, 64.3%, 57.1%가 사적이용시 온라인 복제에 대하여 저작권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사적이용시 전송권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정은 저작권법의 이해당사자중 출판인의 견해가 크게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판례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 이용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적일 경우, 이용된 저작물이 창작성보다는 정보적이거나 사실적인 성격의 것일 경우, 그리고 이용된 저작물이 전체 중에서 일부인 경우와 그러한 이용이 원고의 저작물의 판매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공정이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전송권에 대한 사적이용의 예외규정을 원천적으로 두지 않고 있는 규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대 디지털 형식의 복제 등이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적이용인 경우 저작권자의 혀락없이도 가능하도록 전송권은 제한될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6.2 도서관 이용시 권리제한

현재의 저작권법은 도서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송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관내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디지털 저작물을 사서 혹은 이용자가 디지털 형태로 다시 복제하는 것에 대한 면책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보다 중요한 점은 도서관 관외로의 디지털 전송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민주적 저작권 패러다임에서 저작권법은 정치,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창조적 표현을 촉진하는 생산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국가 혹은 자본가들에 의한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작물 이용자들로부터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민주적인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현 저작권법은 창작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자의 독립적인 창작활동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그에 대한 제한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저작물 이용자들이 디지털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켰다. 따라서 창조적 표현물을 생산할 잠재적 창작자들인 이용자들의 생산기능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복제권 및 전송권 제도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생산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WCT에서는 통상적인 이용에 해당할 경우 전송권에 대한 예외규정을 각국에 위임한 바 있으며, EU에서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에 도서관을 포함 시킴으로써 전송권을 제한시킨 바 있다. 물론, 도서관 관외 전송의 경우 권리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제한받아서는 안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반우회금지 규정을 통하여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 바 있으나,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일지라도 공정이용원칙은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국 저작권법은 제108조에 도서관복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107조 공정이용 일반규정의 적용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은 이와같은 공정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권리제한의 적용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4장의 설문분석에서도 응답자중 78.9%는 도서관 이용자가 관외에서 디지털 저작물을 전송받는 것이 저작권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권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제5장의 판례분석에서 고찰하였듯이 미국 저작권법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도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이용원칙은 도서관에서의 복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제시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이용에 대한 권리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6.2.1 사서에 의한 디지털 복제 및 전송

- 1) WCT 제10조 제1항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에 소장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메일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것이 WCT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할 경우 합리적 부분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저작권이해당사자들은 전체 응답자중 66.6%가 이메일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서

비스가 가능해야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제28조에 도서관 관외전송이 사서에 의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전송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2) 도서관은 그동안 팩시밀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원하는 자료의 일부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전송권이 신설되고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도서관의 팩시밀리 서비스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WCT 제10조 제1항과 미국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기준은 디지털 저작물의 팩시밀리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설문응답자들 중 56.3%는 팩시밀리 전송서비스에 대하여 저작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따라서 전송권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도서관에서의 팩시밀리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3)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도서관에서는 업로드 방식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제한된 횟수에 한정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설문응답자들은 전체응답자중 64.9%가 업로드 방식의 서비스 허용에 찬성하였다. 여기서 업로드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등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을 통하여 소수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폐쇄적인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송권의 제한은 판례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이용이 비영리적이고, 전송되는 저작물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이며, 그러한 이용으로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2.2 이용자에 의한 디지털 복제 및 전송

이용자가 디지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WCT 제10조 제1항의 통상적 이용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1) 전체 설문응답자 중 59.7%가 응답하였듯이, 도서관에 방문한 이용자는 직접 디지털 저작물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거나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물의 제한된 부분과 제한된 횟수에 한하여 매우 엄격하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

2) 도서관 밖에서 화면현시 방법으로 도서관에 소장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단 이 경우 화면에 현시된 저작물을 디지털 복제의 방법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차단되어야 한다. 설문분석을 통해서도 전체 설문응답자 중 78.9% 관외전송이 허용되어야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도서관 밖에서 전송받은 자료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전체 설문응답자 중 64.9%가 이러한 방식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무엇보다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전제해볼 때 공정이용원칙의 제1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용이 저작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미칠 정도로 빈번히 혹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6.2.3 도서관 상호대차를 위한 디지털 복제 및 전송

도서관 상호대차를 위하여 사서가 디지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WCT 제10조 제1항의 통상적 이용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경우, 또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이용의 성격과 저작물의 특성, 이용된 범위, 저작자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공정한 이용일 경우 다음과 같은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1) 디지털 저작물을 상호대차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설문응답자 중 82.5%가 이러한 응답을 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폐쇄적 게시판(29.5%), 이메일(19.2%) 등을 통한 전송 및 복제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을 전송받은 도서관이 해당 저작물을 영구적으로 소장하지 않도록 엄격히 적용될 필요가 있다.

2) 절판된 자료에 대한 디지털 복제물을 타 도서관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메일 혹은 사서들만 이용하는 폐쇄적 게시판 이용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되었다. 설문분석에서는 전체응답자 중 54.7%가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대차 허용을 지지하고 있음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은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도서관을 제한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의 단서 조항의 개정과 전송의 방식이 아닌 복제의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을 상호대차할 수 있도록 국내 저작권법 제28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은 공공의 교육과 문화의 향상발전에 초석이 되는 사회적 기관으로써 그들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이러한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간의 저작물의 이용은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대량으로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경우 허용되어왔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전송권에 대한 예외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전체 도서관의 원활한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국내 저작권법의 기본적 목적 즉, 문화의 향상 발전과 미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도서관간의 상호대차를 위한 전송이 전송권의 예외규정을 통하여 허용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7. 결론

이상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권 제한 방안은 국제 저작권법에서의 ‘통상적인 이용’과 호주 및 미국저작권법의 ‘공정이용원칙’,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한 판례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의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Boyle, James.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Online: a Young Person's Guide.

-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47, 1996.
- Brudenall, Peter. The future of Fair Dealing in Australian Copyright Law.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1997. 석사학위논문.
- Gasaway, Laura. Library Preservation and Recent Copyright Act Amendments. *Information Outlook*, 38(2), 1999. pp. 38-39.
- Gorman, Robert A. and Jane C. Ginsburg. Copyright : Cases and Materials. VA : LEXIS Law Publishing, 1999.
- Litman, Jessica. Digital Copyright. NY : Prometheus Books, 2001.
- Netanel, Neil. Copyright and a Democratic Civil Society. The Law School and the Committee on Graduate Studies of Stanfo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8.
- Patterson, L. Ray and Stanley W. Lindberg. The Nature of Copyright : a Law of Users' Rights. Georgia : The Univ. of Georgia Press, 1991.
- Ryan, Maureen. Fair Use and Academic Expression : Rhetoric, Reality, and Restriction on Academic Freedom. *Cornell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8, 1999.
- Samuelson, Pamela. Good News and Bad New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Front, *Communications of the ACM*, 42(3), 1999. pp. 19-24.
- 박익환. 미국 저작권법상 Fair Use Doctrine에 관한 소고.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석사학위논문.
- 이상정.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소고. 저작권, 41, 1998. pp. 14-23.
- 이호열. WTO 체제하의 저작권 대책 :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사용을 중심으로.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7. 박사학위논문.
- 홍재현.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운영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정보관리학회지, 16(1), 1999. pp. 31-48.